자산운용규정 [2010. 11. 25 규정 제345호]

2011.11.30 개 정 제359호 2022. 2.25 개 정 제462호 2013.11.29 개 정 제372호 2022. 6. 3 개 정 제470호 2014. 3.24 개 정 제379호 2014.12.31 개 정 제393호 2016. 5. 4 개 정 제410호 2020.11.11 개 정 제452호 2020.12.30 개 정 제453호 2021. 5.28 개 정 제456호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(이하 "공제회법"이라 한다) 제16조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26조의 규정에 따라,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(이하 "자산"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증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①자산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는 공제회법,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②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(20.12.30 신설)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전략적 자산배분"이라 함은 공제회 투자정책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자산배분을 말한다.
 - 2. "전술적 자산배분"이라 함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해 결정된 자산배분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단기적인 자산배분을 말한다.
 - 3. "정보자산"이라 함은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공제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공제회의 손익 또는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.
 - 4. "위험관리"라 함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
- 5. "신용등급"이라 함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채권 발행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.
- 6. "듀레이션(Duration)"이라 함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가중 평균 잔존만기를 말한다.
- 7. "전통자산"이라 함은 주식, 채권 등과 같이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.(20.12.30 개정)
- 8. "대체자산"이라 함은 사모투자, 부동산, 인프라, 헤지펀드 등 전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. (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"대체투자"라 한다.)(20.12.30 개정)
- 9. "파생결합증권"이라 함은 금리, 주가지수, 환율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,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.(20.12.30 개정)
- 10. "기회자산"이라 함은 단기자금 및 전략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.(20.12.30 개정)
- 11. "단기자금"이라 함은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단기적으로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.(13.11.29, 20.12.30 개정)
- 12. "전략투자"라 함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산 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.(20.12.30 개정)
- 13. "파생상품"이라 함은 시장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자산 또는 증권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, 금리,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되는 선물, 옵션 등을 말한다.(20.12.30 개정)
- 14. "직접운용"이라 함은 공제회 내부절차에 의해 임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(20.12.30 신설)
- 15. "위탁운용"이라 함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(20.12.30 신설)
-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령, 관련 제규정, 통상적인 사용례의 순에 따른다.
- 제 4 조(자산운용 원칙)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며, 자산은 각 투자유형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 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.

- 제 5 조(윤리의무) ①임직원은 자산을 운용·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회원 부담금의 수탁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2. 자산을 운용·관리함에 있어 청렴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다.
 - 3.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그 밖의 정보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 - ②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,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(ETF는 제외한다), 파생상품, 주식관련 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임기 시작 전 및 해당부서 근무 전 취득한 경우, 또는 근무 중 상속・증여, 증자, 전환권・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22.6.3 개정)
 - ③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,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매매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(22.6.3 개정)
- **제6조(업무수행 및 면책)** ①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산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위 원 회

- 제7조(운영위원회) 공제회법 제11조 및 정관 제16조의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제8조(자산운용위원회) ①공제회 자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16.5.4, 20.12.30, 22.2.25 개정)
 -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이사가 되고, 4인의 위원은 사업이사, 기획 조정실장, 회원사업본부장, 리스크관리실장, 부동산·인프라본부장, 투자전

자산운용규정

략팀장이 되며,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.(16.5.4, 20.12.30, 22.2.25 개정) ④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전술적 자산배분
- 2. 월별 자금배분 및 재원조달
- 3. 기타 자산운용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
- ⑤자산운용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제 9 조(투자심의위원회) ①투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(16.5.4 개정)
 - ②투자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, 관리이사, 사업이사, 사업이사가 지명하는 2인의 직원, 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(13.11.29, 14.12.31, 16.5.4, 20.11.11 개정)
 - ③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이사가 되며,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. (16.5.4 개정)
 - ④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자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(20.12.30, 21.5.28 개정)
 - 1.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.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.(11.11.30, 13.11.29, 14.3.24, 20.12.30 개정)
 - 가. 외부공모를 통해 내·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한 국내·외 투자(20.12.30 신설)
 - 나. 파생결합증권(20.12.30 신설)
 - 다. 국내·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대한 투자(관련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)(20.12.30 신설)
 - 2. 제18조에 대한 투자 중 파생상품 투자(헤지거래는 제외한다)
 - 3.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20.12.30 개정)
 - ⑤투자심의위원회는 소집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(20.12.30 개정)
- 제9조의2(투자심의소위원회) ①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제9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한다.(21.5.28

본조신설)

- ②투자심의소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, 관리이사, 사업이사 및 3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③투자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이사가 되며,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.
- ④투자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공제회가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동일펀드에 추가 투자하거나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동일전략의 신규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투자 금액의 200%를 초과하지 않으며 미화 기준 1억 5천만 달러 이하 또는 1,500억원 이하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
- 2. 공제회가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펀드와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의 경우로서 미화 기준 5천만달러 또는 500억원 이하의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
- ⑤투자심의소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- 제 10 조(위원회 운영) ①자산운용위원회, 투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투자심의소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(16.5.4, 21.5.28 개정) ②제1항의 결과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(21.5.28 신설)
 -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(영상, 전화 등) 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.(20.11.11 신설, 21.5.28 개정)
 - ④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· 보관하여야 한다.(20.11.11, 21.5.28 개정)
 - ⑤이사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(20.11.11, 21.5.28 개정)

제 3 장 자산배분

제 11 조(전략적 자산배분) ①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향후 자금수지,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통자산, 대체자산, 기회자산 등으로 배분하여 운용한다. (11.11.30, 13.11.29 전문개정, 20.12.30 개정)

- 1. (20.12.30 삭제)
- 2. (20.12.30 삭제)
- 3. (20.12.30 삭제)
- 4. (20.12.30 삭제)
- 5. (20.12.30 삭제)
- 6. (20.12.30 삭제)
- 7. (20.12.30 삭제)
- ②제1항의 세부 자산군 분류와 정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(20.12.30 개정)
- ③전략적 자산배분은 연간 단위로 재검토하고,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며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.(20.12.30 신설)
- 제 12 조(자산운용계획) ①공제회는 제11조의 자산배분 목표 및 시장전망과 자금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.
 - ②자산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(전술적 자산배분) 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자 산 운 용

- 제 14 조(주식 직접운용) 주식 직접운용은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회사의 재무 상태, 보유주식의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·운용한다.
- 제 15 조(채권직접운용) ①채권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 종류별, 발행자별, 만기구조별 등으로 분산하여 투자한다.
 - ②채권 투자시에는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금리차 및 유동성 확보 등을 고려하되,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투자한다.
 - (13.11.29 본조 제목 개정)
- 제 16 조(대체투자) 대체투자는 투자자산의 다양성 및 비정형성 등의 특성을 감안 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(20.12.30 개정)
 - ② (14.12.31 개정, 20.12.30 삭제)

제 17 조 (20.12.30 삭제)

- 제17조의2(기회자산) ①단기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야 한다.
 - ②전략투자는 중장기 투자정책을 구현하는 자산으로 운용한다.

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18 조(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)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는 보유 중인 금융자산에 대한 주가, 금리,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최소화 또는 수익 확보를 위하여 운용한다.(13.11.29 개정)

제 19 조 (20.12.30 삭제)

제19조의2(위탁운용) 자산군에 대한 위탁운용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.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20 조 (20.12.30 삭제)

제20조의2(외환 관리) 외환 관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성을 축소하고,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21 조 (20.12.30 삭제)

제21조의2(회원복지사업) 회원복지사업은 투자에 따르는 수익·위험과 함께 회원복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한다.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22 조 (20.12.30 삭제)

제22조의2(외부자문)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, 법률, 세무 및 기타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23 조 (20.12.30 삭제)

- 제23조의2(유가증권 보관 및 대여) ①유가증권은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유가증권의 취득·대여·처분에 따른 출납 및 관리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담당한다.
 - ③자산운용의 효율 제고 및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.

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5 장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재원조달

제 24 조 (20.12.30 삭제)

제24조의2(사고방지) ①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보유 유가증권이 변조·분실 등 사고증권으로 판명될 경우, 즉시 매입처에 변제를 요청하고 투자원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(20.12.30 본조 신설)

제 25 조 (20.12.30 삭제)

제25조의2(자산운용 성과평가) ①성과평가는 실현된 투자의 성과를 목표와 비교·평가·분석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.

②자산운용 성과는 자산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평가하며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률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(20.12.30 본조 신설)

- 제 26 조(외부 재원조달)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로부터 퇴직급여율 미만의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급여율 이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1. 수익원 다각화 및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추진
 - 2. 회원 급여금 지급 재원 부족
 - 3. 기타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- ②외부조달비용은 조달 약정시의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③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(20.12.30 본조 신설)

부 칙 (2010.11.25. 규정 제345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"사업개발규정 제14조"를 "자산운용규정 제16조"로 한다.

②부동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사업개발규정 제14조를"을 "자산운용규정을"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「금융 자산운용규정」, 종전의 「사업개발규정」, 종전의 「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」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「금융자산운용규정」, 종전의 「사업개발규정」, 종전의 「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」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본다.

부 칙 (2011. 11. 30 규정 제359호)
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11. 29 규정 제372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3. 24 규정 제379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12. 31 규정 제393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5. 4 규정 제410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칰** (2020. 11. 11. 규정 제452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2. 30. 규정 제45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「자산운용규정」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1. 5. 28. 규정 제456호)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22. 2. 25. 규정 제462호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22. 6. 3. 규정 제470호)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